

의안번호	2203466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09.13.
추 계 번호	24F34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설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인정기준 완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6조의6 신설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한 감면)	○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2	안 제96조제1항(재해손 실세액공제)	○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 자산상실비율 하향조정(20% → 10%) －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인한 자산상실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만큼 개인지방소득세액 공제 － (자산상실비율)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이 상실 전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6조의6 신설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한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6조제1항(재해 손실세액공제)	

2. 상세 사유

가.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36조의6 신설)

- 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취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할 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규모를 전망해야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움
 - 자연재난·사회재난의 발생 및 피해대상 등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대상 소상공인의 자동차·기계장비의 취득을 예측할 수 없음
 - 참고로, 경상북도는 '21~'2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리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도 100만원)
 - (감면실적) 2021년 1,585건 12.7억원 / 2022년 2,846건, 24.2억원
 - 또한 현행 「지방세특별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표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적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92조 제1항)	10	11	48	14	92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생업활동용 자동차·기계장비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나.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인정기준 하향조정(안 제96조제1항)

- 개정안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함)로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업자와 달리 자산상실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부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개인소득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 (자산상실비율)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개정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자산상실비율 구간별 재해로 인해 자산이 상실된 소상공인 현황, 해당 소상공인의 자산총액 및 상실된 자산가액 등에 대한 자료와 함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재해의 유형·빈도·강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를 현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자연재난·사회재난의 발생 및 피해대상 등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현황 및 해당 소상공인의 자산손실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